

# 실세금리저축예금 상품설명서



## 상품소개

입출금이 자유롭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이 가능한 예금

## 상품의 특징

- 가입대상 : 개인고객  
이자율 : 변동금리 (시장 실세금리에 연동하여 매일 고시)

(2010년 3월 8일기준 : 추후 변동 가능, 세전)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연 0.00%	연 0.10%	연 0.25%	연 0.50%	연 0.75 %	연 1.40%

- 이자지급 : 매월 원금에 가산 (월복리 효과)  
예입 및 인출 : 제한없음  
기타 :
  - 통장식, ATM, 폰 banking, 인터넷 banking 이용 가능
  - HSBC 노후 플래닝 서비스를 받으시는 고객은 5천만원이상 잔고에 대해 우대금리 적용

## 적용되는 약관의 명칭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실세금리저축예금약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예금거래기본약관>

예금은 은행이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인수받아 확인한 때와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이체하여 예금통장에 입금기록을 확인한 때에 예금의 거래가 성립됩니다. 또한 수표를 이용하여 입금하거나 송금한 경우에는 수표를 교환에 돌려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거래가 성립됩니다. (다만, 자기앞수표는 지급 제시기간 내이고 사고신고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고 예금통장에 입금기록을 확인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은행이 이율을 바꾸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새로이 바뀐 이율이 적용되며,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당시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변동금리 적용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합니다.

통장, 도장, 카드 등을 분실 또는 멸실,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 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긴급한 상황에는 본 은행의 콜센터로 전화신고 후 다음 영업일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거래처가 신고한 서명(또는 인감)이 육안으로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고 여겨지고 비밀번호가 일치하여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은행에 사전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본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은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이자계산의 기준이 되는날을 기준일이라 하며 그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을 원가일 이라고 하며 기준일까지 계산된 이자를 원가일에 고객님의 계좌로 이자를 지급해드리게 됩니다.

1. 보통예금의 기준일 : 매년 6월, 12월 28일
2.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및 가계당좌예금 : 매월 28일

이자의 계산은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영업점에 계시된 이율로 계산을 합니다.

아래와 같이 은행계좌에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분류되어 따로 관리가 되며 정상계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결제시에 지급자금이 부족한 경우 고객님의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처리가 되며,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를 하게됩니다.

고객님께서 본인이 아니시고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하고자 하실때에는 수표•어음 거래에 사용할 대리인 성명과 인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객님의께서 대리인을 통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면에 고객님의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을 적고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하며 은행은 대리인의 면의만으로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지급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기 약관의 주요내용은 해당 약관의 요약이므로 자세한 약관의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 및 가까운 영업점에 비치된 은행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